



질의와 회신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1.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甲(양도인)과 乙(양수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甲이 소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당초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소유자인 甲이 원상회복한 경우 이를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甲에게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또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 귀 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甲 명의로에서 乙 명의로 개서의 원인이 되었던 당초의 주식 양도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을 함에 따라 그 약정에 기초하여 乙 명의로 개서된 주식을 원소유자인 甲 명의로 원상회복하는 조치의 결과로 甲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114(2008.3.20)]

2. 광고비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 의

신축건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건축물 신축공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총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는 분양을 위한 선전광고비등은 제외하고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것은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지방세법 운용세칙 제111-1)으로, 귀문의 경우 甲법인이 乙법인과 건축물 시공, 광고, 분양대행 업무를 포함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분양을 위한 광고비 및 분양대행수수료 비용이 도급공사금액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건축공사 부대비용이 아니라 건축물의 분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판매관리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세과-5(2008.3.13)]

3.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 기산일

질 의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 적용 시점을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Hundai Translead 거래관련)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추가납부(우주항공 사업부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회 신

가.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서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 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보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상호합의의 건은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한 우주항공 사업부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결정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의 익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세권자가 이러한 법인세 경정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세과-113(2008.3.25)]

4. 사료관리 면허세 부과대상 여부

질 의

사료관리 면허세 부과세 대상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면허증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료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성분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사료제조업등록과 사료성분등록을 받아 사료생산을 영위하다 사료제조업 등록변경 없이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을 변경 등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5종의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도세과-167(2008.3.25)]

5. 원인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 의

법원의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와 당사자간의 합의해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인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甲과 乙이 대물변제 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계약의 위법성 등으로 소송에 의한 원인무효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원상회복 되는 경우와 당사자간 매매

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합의해제의 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등,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93누11319, 1993.9.14 참조), 그 소유권을 환원받은 당초소유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세과-215(2008.3.28)]

6. 유류분 반환을 받은 경우 취득세기 및 등록세율

질 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받은 경우 취득의 시기와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상속으로 인한 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세과-115(2008.3.20)]



7. 교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질 의

거주자 개인이 단독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교량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건축물과 토지에 장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및 접안시설, 기타시설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그 열거한 시설물 중 잔교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0두5739, 2002.5.17)에서는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 즉,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기타물건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서는 잔교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기 편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과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 놓은 구조물을 말하고 그 용도로는 승객용, 일반화물용, 송유관 및 석탄·시멘트 운반용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러한 의미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나. 귀문의 경우 거주자가 통행을 위하여 설치한 단독주택 출입용 교량과 같은 일반적인 교량으로서 다리는 지방세법 제75조의2에서 열거하는 잔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세과-116(2008.3.20)]

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토지·건물의 평가방식 등

질 의

①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 순자산가액 평가를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사업용 자산인 토지·건물 등을 반드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거주자 법인전환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인 경우에도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에서 말하는 자산 시가 평가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 취득 평가방법은 반드시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거나 장부가액이라도 취득당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평가가능할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5조(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통합일·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 출자내역,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 및 부채의 합계액이 불분명하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는 바 이러한 회신결과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라며 관련한 질의내용은 자세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시어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세과-130(2008.3.21)]

9. 임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임대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 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자가 임대중인 부동산에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전환시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에 의한 취득·등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과세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법인전환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는 법문은 당해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소비성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임대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한 부동산에 단지 임차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다는 점만을 들어 부동산을 임대한 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 후에도 계속 임대사업에 사업용재산 제공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단서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단서의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세정과-2011, 2004.7.12 참조)

[도세과-131(2008.3.21)]

10. 백화점매장근무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사업소’ 기준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 매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

질 의

백화점매장근무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사업소’ 기준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 매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 전국 각지의 백화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백화점매장 근무자의 채용과 퇴사가 각 매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세과-114(2008.3.25)]

11. 공부상 전을 대지로 사용하다가 건물신축 후 지목을 변경한 경우 취득시기

질 의

공부상 전(田)인 토지를 건축물 신축하기 이전부터 사실상으로 대지로 사용하다가 건축물 신축 후 공부상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서 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8항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지목변경일 이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공부상 전(田)인 토지를 건축물 신축 이전부터 대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가 건축물 신축 후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지목변경을 하였다 할 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



다는 사유만으로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의 시기는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토지이용상황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117(2008.3.20)]

12.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여부

질 의

-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영업용 화물차량을 신규로 허가받지 못하고 기존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받아 중고 또는 신규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차량 등을 구입 등록한 이후 기존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받아 신규 및 중고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를 보면 일부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을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을 양수받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양수자는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종전 사업의 승계라 보아지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에 따른 공급 가능한 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 운송사업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로부터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화물자동차사업을 양수받았다면 양수한 사업에 관하여는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과세감면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도세과-83(2008.3.18)]

1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여부

질 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4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20조제3항 본문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4년 이내로 과세면제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개정조항(제1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나. 이러한 개정법 부칙 제43조를 통하여 개정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면제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면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2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라.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과세부과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179(2008.3.25)]

14.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의 적용범위

질 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취득 재산 과세감면의 규정에 따르면 당초 2년 이내의 과세면제기간을 4년 이내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제1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회 신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20조제3항 본문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4년 이내로 과세면제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개정조항(제1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개정법 부칙 제43조를 통하여 개정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만 과세면제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면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2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개정법 시행일 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과세부과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세과-210(2008.3.27)]

15.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질 의

- ① 개인사업자 ‘갑’이 2006.3.6. 직물제조업을 A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스타일)을 하였으나 같은 해 5.8.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상호:△식품)하고 같은 달 23. A장소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이와 함께 같은 달 23. 직물제조업을 연접한 B장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는 이전의 ○○스타일을 재사용 함)을 한 후 같은 날 사업장소재지상의 공장을 취득한 경우 조세제한특례법상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창업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4항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개인사업자 갑이 당초 2006.3.6. 직물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A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2006.5.8.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업종을 식품제조업으로 변경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이므로 이러한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같은 달 23. 취득한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등기한 사업용재산으로 보아 취·등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라. 2006.5.23. 개인사업자 갑이 직물제조업을 위해 취득한 공장의 경우는 같은 달 8. 당초 운영하던 직물제조업을 식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함으로써 직물제조업은 폐기한 것이므로 같은 달 23. 직물제조업을 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다시 폐업 전 동종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세과-55(2008.3.17)]

16. 송전선로로 이용되는 임야의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여부

질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내 변전소와 소유 임야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소유 임야의 정상부분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를 연결하도록 이용된 경우에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8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종합·별도·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별도 또는 분리과세 대상 이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내의 변전소가 경계를 이루어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인하여 귀하 소유 임야의 정상부분의 일부가 이용되더라도 별도합산(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제1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임야) 또는 분리과세(동법시행령 제132조제2항제5호 가목 내지 사목)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한해서만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 소유 임야의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일부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 됩니다.

[시군세과-91(2008.3.24)]

